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교 육 청 소 년 과

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구 미 시

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26. 10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구미시장학재단이 장학사업과 지역특화 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교육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적용범위 및 설립에 관한 사항(안 제1조～제3조)

나. 사업 및 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)

다. 임원 및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제7조)

라.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마.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(안 제9조, 제10조)

바.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, 제12조)

사. 공무원의 파견, 잔여재산의 귀속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～제15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민법」,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,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　　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　　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구미시장학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학사업,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구미시장학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구미시장학교육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「민법」,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공익법인법”이라 한다)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설립) 재단은 「민법」 및 「공익법인법」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제4조(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1. 지역 인재 육성 장학사업

2.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

3. 교육정책 연구 및 개발

4. 진학·진로 지원사업

5. 서울 구미학숙 운영 및 관리

6.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장학·교육사업

7.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5조(재산의 조성) 재단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구미시의 출연금

2. 민간 기탁금

3. 기금의 운용 수익금

4. 그 밖의 수입금

제6조(임원 등)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, 「공익법인법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.

② 그 밖에 임원의 임기 및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7조(기구의 설치) ①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재단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, 채용 관련 세부사항은 재단 정관 및 재단 규정으로 정한다.

제8조(재정지원)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

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제9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10조(결산서의 제출)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,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)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제12조(지도·감독)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,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(공무원의 파견 등)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14조(잔여재산의 귀속)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미시에 귀속한다.

제15조(운영규정)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, 이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단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은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구미시장학교육재단으로 본다.

제3조(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임원으로 본다.

관계법령

□「민법」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□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·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, 학술, 자선(慈善)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(이하 “공익법인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설립허가 기준) ① 주무 관청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, 사단법인은 회비·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(財源)의 수입(이하 각 “기본재산”이라 한다)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.

② ~ ③ 생 략

제5조(임원 등)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,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.

② ~ ⑨ 생 략

□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奬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2. 생 략

② ~ ③ 생 략

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

⑤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
2. 주요 업무와 사업

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
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○ 기존 구미시장학재단에서 수행하던 장학 사업과 함께 지역 특화 교육 정책 추진으로 사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, 운영비(인건비, 경상비) 등 추가 비용이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○ 추계기간 : 2027년 ~ 2031년 (5년간)

○ 세입(자체수입) 산정 기준

- 재단의 중·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입 항목별로 보수적인 증가율을 적용함.
- 이자수입은 연 1% 인상을 적용하고, 구미학숙 입사생 수입은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현 수준(동결)으로 산정함.

○ 세출(비용) 산정 기준

- 인건비 : 공무원 보수체계(호봉표)를 준용하여 직급별 기본급과 수당 등을 현실성 있게 산정하였으며, 공무원 인건비 장기 평균 인상률을 고려한 연 2.56% 인상률 적용 및 중기 조직 확대 로드맵(4차년도 전담 인력 증원)을 반영함
- 사업비 : 장학사업, 구미학숙 운영, 진학·진로 지원사업 등 핵심 사업비의 기초 금액은 2026년 기존 편성 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, 이후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장학 및 구미학숙 운영비는 연 1%, 진학·진로 지원사업비는 연 2%의 인상률을 차등 적용함

- 운영비 : 타 유사 기관의 경상운영비 평균 비율(총예산 대비 약 7.67%)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인 5% 내외로 상한을 설정하였으며, 연 2% 인상을 가정하여 추계함

○ 시비 투입액(총 비용) 및 세출 규모 해석

- 본 추계서 상 도출된 '총 비용(구미시 총 부담액)'은 재단 본부 및 구미학숙 운영을 위한 '출연금'과 진학진로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위한 '보조(대행)사업비'가 합산된 금액임.
- 서울 구미학숙의 경우 시비 출연금 약 1.5억 원과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어 왔으며, 진학진로지원센터(약 2.5억 원) 또한 시 일반회계로 직접 집행되던 사업임.
- 따라서 본 조례 전부개정으로 인해 구미시가 실질적으로 순증액, 부담해야 하는 시비는 기존 이관 예산을 제외한 필수 운영비 및 물가상승분 수준에 한정됨.
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○ 세입	916	915	922	930	938	4,621
	소계(a)	916	915	922	930	938	4,621
세출	○ 사업비	1,438	1,455	1,472	1,490	1,507	7,362
	○ 인건비	262	269	276	414	424	1,645
	○ 경상비	89	91	92	94	96	462
	소계(b)	1,789	1,815	1,840	1,998	2,027	9,469
□ 총 비용(a-b)		△873	△900	△918	△1,068	△1,089	△4,848

4. 재원조달 방안 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시 비	873	900	918	1,068	1,089	4,848

5. 부대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교육청소년과 이주호 (☎480-2703)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재단 개편 1차년도

구 분			금액(천원)	산출내역
세입	자체수입		915,800	○ 이자수입 : 650,000,000원 ○ 법인세 및 주민세 환급 : 107,800,000원 ○ 구미학숙 입사생 수입 : 158,000,000원
세입 총계				915,800,000원
세출	인건비		262,421	○ 대표이사 63,660,000원 × 1명 × 1년 : 63,660,000원 ○ 6급 50,244,000원 × 1명 × 1년 : 50,244,000원 ○ 7급 41,587,000원 × 1명 × 1년 : 41,587,000원 ○ 8급 36,187,500원 × 2명 × 1년 : 72,375,000원 ○ 9급 34,555,000원 × 1명 × 1년 : 34,555,000원
	사업비	장학사업	722,800	○ 장학금 지급 : 604,500,000원 ○ 학력제고 지원사업 : 50,000,000원 ○ 멘토링프로그램 : 4,000,000원 ○ 기탁자 예우 및 홍보 : 13,000,000원 ○ 장학증서 제작 : 6,000,000원 ○ 회계감사 수수료 : 7,000,000원 ○ 회의 참석 수당 및 기타 : 38,300,000원
		구미학숙 운영	456,334	○ 인건비 : 143,014,000원 ○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: 233,320,000원 ○ 시설유지비 : 60,000,000원 ○ 자산취득비 : 20,000,000원
		진학진로 지원	259,002	○ 인건비 : 8,092,000원 ○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: 26,710,000원 ○ 강사수당 : 32,200,000원 ○ 행사운영비 : 72,000,000원 ○ 민간위탁금 : 120,000,000원
	사업비 소계			1,438,136,000원
	경상비		88,907	○ 관리 운영비 등 (본부 운영비 등) : 88,907,000원
세출 총계				1,789,464,000원
총 비용				873,664,000원

2. 재단 개편 2차년도

구 분			금액(천원)	산출내역
세입	자체수입		914,600	○ 이자수입 : 656,500,000원 ○ 법인세 및 주민세 환급 : 100,100,000원 ○ 구미학숙 입사생 수입 : 158,000,000원
세입 총계				914,600,000원
세출	인건비		269,139	○ 대표이사 65,289,000원 × 1명 × 1년 : 65,289,000원 ○ 6급 51,531,000원 × 1명 × 1년 : 51,531,000원 ○ 7급 42,652,000원 × 1명 × 1년 : 42,652,000원 ○ 8급 37,114,000원 × 2명 × 1년 : 74,228,000원 ○ 9급 35,439,000원 × 1명 × 1년 : 35,439,000원
	사업비	장학사업	730,028	○ 장학금 지급 : 610,545,000원 ○ 학력제고 지원사업 : 50,500,000원 ○ 멘토링프로그램 : 4,040,000원 ○ 기탁자 예우 및 홍보 : 13,130,000원 ○ 장학증서 제작 : 6,060,000원 ○ 회계감사 수수료 : 7,070,000원 ○ 회의 참석 수당 및 기타 : 38,683,000원
		구미학숙 운영	460,897	○ 인건비 : 144,444,000원 ○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: 235,653,000원 ○ 시설유지비 : 60,600,000원 ○ 자산취득비 : 20,200,000원
		진학진로 지원	264,182	○ 인건비 : 8,254,000원 ○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: 27,244,000원 ○ 강사수당 : 32,844,000원 ○ 행사운영비 : 73,440,000원 ○ 민간위탁금 : 122,400,000원
	사업비 소계			1,455,107,000원
	경상비		90,685	○ 관리 운영비 등 (본부 운영비 등) : 90,685,000원
세출 총계				1,814,931,000원
총 비용				900,331,000원

3. 재단 개편 3차년도

구 분			금액(천원)	산출내역
세입	자체수입		922,166	○ 이자수입 : 663,065,000원 ○ 법인세 및 주민세 환급 : 101,101,000원 ○ 구미학숙 입사생 수입 : 158,000,000원
세입 총계				922,166,000원
세출	인건비		276,029	○ 대표이사 66,961,000원 × 1명 × 1년 : 66,961,000원 ○ 6급 52,850,000원 × 1명 × 1년 : 52,850,000원 ○ 7급 43,744,000원 × 1명 × 1년 : 43,744,000원 ○ 8급 38,064,000원 × 2명 × 1년 : 76,128,000원 ○ 9급 36,346,000원 × 1명 × 1년 : 36,346,000원
	사업비	장학사업	737,328	○ 장학금 지급 : 616,650,000원 ○ 학력제고 지원사업 : 51,005,000원 ○ 멘토링프로그램 : 4,080,000원 ○ 기탁자 예우 및 홍보 : 13,261,000원 ○ 장학증서 제작 : 6,121,000원 ○ 회계감사 수수료 : 7,141,000원 ○ 회의 참석 수당 및 기타 : 39,070,000원
		구미학숙 운영	465,506	○ 인건비 : 145,888,000원 ○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: 238,010,000원 ○ 시설유지비 : 61,206,000원 ○ 자산취득비 : 20,402,000원
		진학진로 지원	269,466	○ 인건비 : 8,419,000원 ○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: 27,789,000원 ○ 강사수당 : 33,501,000원 ○ 행사운영비 : 74,909,000원 ○ 민간위탁금 : 124,848,000원
	사업비 소계			1,472,300,000원
	경상비		92,499	○ 관리 운영비 등 (본부 운영비 등) : 92,499,000원
세출 총계				1,840,828,000원
총 비용				918,662,000원

4. 재단 개편 4차년도

구 분			금액(천원)	산출내역
세입	자체수입		929,808	○ 이자수입 : 669,696,000원 ○ 법인세 및 주민세 환급 : 102,112,000원 ○ 구미학숙 입사생 수입 : 158,000,000원
세입 총계				929,808,000원
세출	인건비		413,614	○ 대표이사 68,675,000원 × 1명 × 1년 : 68,675,000원 ○ 6급 54,202,500원 × 2명 × 1년 : 108,405,000원 ○ 7급 44,864,000원 × 1명 × 1년 : 44,864,000원 ○ 8급 39,038,667원 × 3명 × 1년 : 117,116,000원 ○ 9급 37,277,000원 × 2명 × 1년 : 74,554,000원
	사업비	장학사업	744,702	○ 장학금 지급 : 622,817,000원 ○ 학력제고 지원사업 : 51,515,000원 ○ 멘토링프로그램 : 4,121,000원 ○ 기탁자 예우 및 홍보 : 13,394,000원 ○ 장학증서 제작 : 6,182,000원 ○ 회계감사 수수료 : 7,212,000원 ○ 회의 참석 수당 및 기타 : 39,461,000원
		구미학숙 운영	470,161	○ 인건비 : 147,347,000원 ○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: 240,390,000원 ○ 시설유지비 : 61,818,000원 ○ 자산취득비 : 20,606,000원
		진학진로 지원	274,855	○ 인건비 : 8,587,000원 ○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: 28,345,000원 ○ 강사수당 : 34,171,000원 ○ 행사운영비 : 76,407,000원 ○ 민간위탁금 : 127,345,000원
	사업비 소계			1,489,718,000원
	경상비		94,349	○ 관리 운영비 등 (본부 운영비 등) : 94,349,000원
세출 총계				1,997,681,000원
총 비용				1,067,873,000원

5. 재단 개편 5차년도

구 분			금액(천원)	산출내역
세입	자체수입		937,526	○ 이자수입 : 676,393,000원 ○ 법인세 및 주민세 환급 : 103,133,000원 ○ 구미학숙 입사생 수입 : 158,000,000원
세입 총계				937,526,000원
세출	인건비		424,201	○ 대표이사 70,433,000원 × 1명 × 1년 : 70,433,000원 ○ 6급 55,590,000원 × 2명 × 1년 : 111,180,000원 ○ 7급 46,012,000원 × 1명 × 1년 : 46,012,000원 ○ 8급 40,038,000원 × 3명 × 1년 : 120,114,000원 ○ 9급 38,231,000원 × 2명 × 1년 : 76,462,000원
	사업비	장학사업	752,149	○ 장학금 지급 : 629,045,000원 ○ 학력제고 지원사업 : 52,030,000원 ○ 멘토링프로그램 : 4,162,000원 ○ 기탁자 예우 및 홍보 : 13,528,000원 ○ 장학증서 제작 : 6,244,000원 ○ 회계감사 수수료 : 7,285,000원 ○ 회의 참석 수당 및 기타 : 39,855,000원
		구미학숙 운영	474,863	○ 인건비 : 148,821,000원 ○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: 242,794,000원 ○ 시설유지비 : 62,436,000원 ○ 자산취득비 : 20,812,000원
		진학진로 지원	280,352	○ 인건비 : 8,759,000원 ○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: 28,912,000원 ○ 강사수당 : 34,854,000원 ○ 행사운영비 : 77,935,000원 ○ 민간위탁금 : 129,892,000원
	사업비 소계			1,507,364,000원
	경상비		96,236	○ 관리 운영비 등 (본부 운영비 등) : 96,236,000원
세출 총계				2,027,801,000원
총 비용				1,090,275,000원

소 관 부 서		교육청소년과
입 안 자	과 장	민 명 숙
	팀 장	심 주 희
	담 당 자	이 주 호 (480-2703)